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1
----------	-----------

제안년월일: 2022년 11월 2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에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화학식을 국제 표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조문 내용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5조).
- **안** 제5조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자·보조 대상 및 절차를 수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₆)”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차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u>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u>서울특별시</u>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 가스 저감, 신·재생에너 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대응기 금-----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생 략)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 소(CO ₂), 메탄(CH ₄), 아산화질소(N ₂ O), 수 소불화탄소(HFCs), 과	제2조(정의) ----- ----- -----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호---. 2. (현행과 같음)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 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 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 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 -----

<p>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기후변화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 ----- ----- ----- <u>기후 대응기금</u>----- -----.</p>	<p>제3조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2027년 12월 31일</u>-----.</p>	<p>제3조의2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5조(기금의 용도)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 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u></p> <p>12. <u>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u></p>	<p>제5조(기금의 용도) -----</p> <p>-----</p> <p>-----.</p> <p>1.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p> <p>2.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u>」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p> <p>3.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u>」</p>

<p><신 설></p>	<p><u>일자리 전환·창출 지원</u> 13.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u></p>	<p>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p>
<p><신 설></p>	<p>14.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u></p>	<p>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p>
<p><신 설></p>	<p>15.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u></p>	<p>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p>
<p><신 설></p>	<p>16.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u></p>	<p>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융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p>
<p><신 설></p>	<p>17. <u>차입금의 원리금 상환</u></p>	<p>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융자</p>
<p>11. ~ 13. (생략)</p>	<p>18. ~ 20.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p>	<p>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생략)</p> <p>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5조제19호-----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p> <p>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p> <p>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p> <p>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p> <p>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p>
---	--	--

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u></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u>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 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u></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 ----- <u>기 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u>가스사업자로 한다.</u></p> <p>③ <u>제5조제9호에 따라 기 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 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 업자로 한다.</u></p> <p>④ <u>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 다.</u></p> <p>⑤ <u>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 의 절차·한도액·조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개정안과 같음)</p>
--	--	---